

## 「인터넷 FX 딜링거래 약정서」 개정대비표

1. 개정 시행(예정)일: 2021.06.07
2. 개정 내용

개정전	개정후	비고
<p><b>제19조(거래내용등에관한책임)</b></p> <p>① 본인은 “FX 딜링거래”의 내용과 그에 관한 국내외 외환 시장의 관련법규 및 관행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며 자기의 계산 하에 독립된 정보와 판단에 의하여 이 약정에 따른 “FX 딜링거래”를 체결합니다.</p> <p>② 은행은 “FX 딜링거래”의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, “FX 딜링거래”의 결과에 대하여 본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</p>	<p><b>제19조(거래내용등에관한책임)</b></p> <p>① 본인은 “FX 딜링거래”의 내용과 그에 관한 국내외 외환 시장의 관련법규 및 관행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며 자기의 계산 하에 독립된 정보와 판단에 의하여 이 약정에 따른 “FX 딜링거래”를 체결하여야 하며, 은행은 “FX 딜링거래”의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.</p> <p>② 제①항의 거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결정 하에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. 다만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해당 조항에 따릅니다.</p>	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여부: 적용